

예산총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7,128,875,273	213,866,258
일반회계	6,429,833,922	192,895,018
특별회계	699,041,351	20,971,241
기타특별회계	699,041,351	20,971,241
소방특별회계	314,490,615	9,434,71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40,168,000	10,205,040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2,661,590	379,848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557,240	46,717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19,420	24,583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7,648,979	829,469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695,507	50,86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375,33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06,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